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공원, 도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(☎440-1714), 북부공원사업소(☎458-7184)에 갖추어 놓고 일반에게 보입니다.

2016. 6. 7.

인 천 광 역 시 장

1. 결정취지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 사항

2. 위치

○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

3. 면적 또는 규모

○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 (㎡)			최 초 결정일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
변경	-	경명공원	근린공원	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	23,541	826	24,367	2015.9.7.

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공원)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 표시번호	시설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-	경명공원	면적: 23,541㎡→24,367㎡ (증가 826㎡, 3.51%)	· 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공원에서 제척 · 주변 아파트 담장과 공원사이의 이격 공간 경계조정

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사용 형태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
기정	소로	1	1	10~13	일반 도로	국지 도로	520	광로 3-9	중로 2-190	연희동	1978. 3. 8.
변경	소로	1	1	10~18	일반 도로	국지 도로	520	광로 3-9	중로 2-190	연희동	

○ 도시관리계획(시설: 도로)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 전 도로명	변경 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1-1	소로 1-1	일부구간 확폭	보도가 설치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일부구간 편입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가능). 끝.